
2022 세계개편안 주요내용 요약

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그룹

July 22, 2022

I.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통합고용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던 기존의 고용증대(제29조의7)/사회보험료(제30조의4)/경력단절여성(제29조의3 제1항)/정규직 전환(제30조의2)/육아휴직 복귀자(제29조의3 제2항) 세액공제 항목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함. 기본공제와 우대공제(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추가공제(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로 나누어 공제액을 차등 계산함

2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대상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현재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중 비과세의 한도를 기존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누적한도 : 5억원)으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여 코스피·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함

II.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1 매출액 기준 및 공제한도 등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중 하나인 “중견”기업의 기준을 기존의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현재의 200~500억원에서 400~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현재의 ‘지분 50% 이상’에서 ‘지분 40% 이상’으로 완화함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 지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2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5년으로 단

축하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할 것을 삭제하고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유지할 것에서 5년 통산 90% 이상 유지할 것으로 완화함. 사후관리 요건 중 자산 유지 의무와 관련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의 처분이 제한되는 것에서 40% 이상의 처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완화됨

Ⅲ. 금융시장의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양도, 환매 등을 통해 실현된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기존에 비과세대상이었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나, 대내외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3. 1. 1.에서 2025. 1. 1.로 연기함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및 과세기준 완화

신규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 주체인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일정 보유금액(1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을 삭제하고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보유금액 판정시 본인 및 기타주주(친족, 경영지배 관계)의 보유분을 합산하던 것에서 본인의 보유금액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함

IV.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수정하여 세율 6%의 적용기준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의 적용기준을 1,200~4,600만원 이하에서 1,400~5,000만원 이하로, 세율 24%의 적용기준을 4,600~8,800만원 이하에서 5,000~8,8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중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공제액 한도 66~50만원”을 “총급여 7,000만원~1.2억원 이하 : 66~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으로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2**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에서 12%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로 상향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

V.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기존의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으로 나누어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초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주택 수가 아닌 과세표준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각 구간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함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다주택자 초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3.0%	6.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법 인	3.0%	6.0%	94억원 초과	2.7%
			법 인	2.7%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납부유예 도입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금액을 기존의 6억원(일반), 11억원(1세대 1주택자)에서 9억원(일반), 12억원(1세대 1주택자)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 하인 사람이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함

3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경우(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지방 저가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함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고,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 12. 31.에서 2025. 12. 31.까지로 연장함